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1
----------	------

제출연월일 : 2018. 3.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 정비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을 반영한 7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나.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4조, 안 제6조)

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정비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위임의 근거 명확화(안 제7조)

3. 근거법규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 5건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18. 1. 8. ~ 2018. 1. 29.(의견없음)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77호

제1조(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

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원은”을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국·공유재산 및”을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로, “대여 할”을 “대여할”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03호

제2조(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

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41호

제3조(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

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93호

제4조(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22호

제5조(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12호

제6조(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다”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12호

제7조(울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른 수목 중”을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실)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육성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u>문화원</u>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시장의 인가를 받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한다.</p>	<p>제2조(지원·육성대상 문화원) ----- ----- ----- <u>문화원</u>(이하 "<u>문화원</u>"이라 한다)은 ----- ----- ----- ----- -----.</p>
<p>제3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① (생략)</p> <p>②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항의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u>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u>할 수 있다.</p>	<p>제3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u>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u> ----- <u>대여</u>할 -----.</p>

○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운영) ① ~ ④ (생략) ⑤ <u>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u> ⑥ (생략)	제12조(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생략)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1. ~ 3. (생략) ③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u>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생교육과)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손해배상) 이용자가 물놀이 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고의 또 는 과실로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 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그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 제>

○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행정과)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산금등) ①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배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 ③ (생 략)	제7조(가산금등) ① ----- ----- -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행정과)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 이 울산광역시 중구 주 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 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조(세입) ----- ----- -----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재원	<삭 제>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삭 제>
3.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삭 제>
4. 그 밖의 수입	<삭 제>
제5조 (보조 및 용자) 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용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조 및 용자) ----- ----- ----- ----- -----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다.

○ 울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녹지과)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현행	개정안
<p>1. “가로수 및 공원녹지”(이하 “가로수”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 환경오염 저감,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u>따른 수목 중</u>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1. ----- ----- ----- ----- ----- ----- ----- ----- ----- 따라 ----- ----- -----.</p> <p>2. ~ 3. (현행과 같음)</p>

근거법규

「국유재산법」

-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개정 2011.3.30.>
-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개정 2011.3.30.>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 ⑤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지방문화원진흥법」

-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